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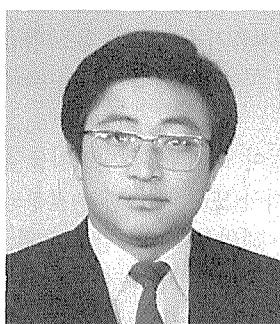
# 역사의 순환으로 끝날 일인가

**석**유산업의 사업행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주 중요한 특성이 두가지가 있는데 석유산업에 오랫동안 몸 담아온 사람들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일반 산업과 다른 석유산업의 독특한 특성 때문일 것이다. 첫째 특성은 석유 제품의 連產性이고 둘째 특성은 석유산업의 부가가치가 輸送費 차이에서 창출된다는 점이다.

석유제품이 連產品이기에 석유수급과 가격이 유달리 복잡하고(多元一次 방정식의 최대치를 구하는 행위로 요약 가능) 이로 인해 일반산업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예: 국내 수요의 약 20% 정도는 수출입 발생이 불가피함)이 유발된다는 점은 그대로 알려진 점이지만, 석유산업이 輸送費 씨움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은 특성이다.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산유국으로

부터 원유를 구입하여 소비지에서 원유를 정제하여 생산된 석유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다른 국가(產油國 포함)의 석유정제시설로부터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방법이다. 이 두가지 방법을 수송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산유국으로부터 원유 도입시에는 VLCC(Very Large Crude Carrier, 약 25만톤급)라는 대규모 수송선으로 원유를 수송하게 되지만 석유제품을 수입시에는 다양한 석유제품을 작은 수송선(보통 약 2~3만톤급)으로 수송하게 되는 바, 여기서 수송비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수송비 차이 때문에 석유정제시설을 소비지 국가에 세우는 것이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현상이다(이를 소비지정제주이라고 하며, 이를 채택시 석유제품 보다는 원유확보를 우선하게 되므로 석유위기시 수급파동의 가능성성이 적다는 또다른 장점이 있음).



李 昌 載  
〈쌍용정유 업무과장〉

최근 국내 정유사들이 B-C유크레이킹 시설(중질유 분해·탈황시설)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 열심히 짓고 있는데 이것도 수송비 절감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국내에 남아도는 重質油(B-C유)를 재처리(Cracking)하여 경질유를 생산함으로써, 국내 수급구조상 부족한 경질유(나프타/등유/경유 등)를 수입할 때 드는 추가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일부 정유사들이 中國에 정유공장을 짓기 위해 노력중인데, 이 또한 가급적 소비지에 근접하여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수송비를 절감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석유산업의 주요 사업행태는 결국 수송비절감을 위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수송비 차이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다른 산업에서도 볼 수 있지만(예: 삼성전자와 금성사의 지리적 입지차이가 社勢의 역전현상을 일으킴。「장사는 목이 반이다」라는 말을 상기할 것.) 특히 석유산업의 경우 생산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어 있고 품질의 차별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송비 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기하 절대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석유산업을 달리 표현하면 물류산업 또는 수송산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와같이 석유산업을 수송비 절감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간파하는데 큰 도움

이 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주변국들의 석유수급 상황을 살펴보자. 러시아, 中國, 동남아시아(베트남 포함)의 경제발전 및 개방화의 여파로 이 지역에서의 석유거래 규모는 실로 급격히 팽창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요의 약 20% 정도의 석유제품의 수출입은 석유의 連產的 특성상 불가피하며 이 지역은 새로운 유전의 발견, 석유정제시설의 절대부족등으로 더욱 석유거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석유 국제거래의 규모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한편 日本은 2차세계대전에서의 패전의 캠플렉스가 남아 있고 석유 메이저들이 국내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관계 등으로 석유에 관한 한 수입은 자유로히 허용해도 수출은 철저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만성적인 무역흑자국인 점도 작용)이다.

그러면, 이러한 주변국들의 석유거래규모의 확대현상과 수송비가 석유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지리적 입지조건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한반도는 석유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동북아시아의 연결편으로서 바다로도 대륙으로도 연결된 최적의 석유수출입기지로서의 지리적 여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석유수출시장이 갖고 있던 장점보다 한국의 조건이 더 훌륭한 것이다. 이 지역에서 이제는 싱가포르보다 한국

으로부터 석유제품을 수입할 때 수송비가 더 싸다는 점은 참으로 중요한 변화인 것이다. 이러한 큰 기회는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나라 석유산업은 새로운 발전잠재력을 지니게 되었으며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석유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법령과 제도는 어떠한가. 현 석유사업법령에서는 석유산업을 내수산업으로 한정시키고, 국내 총석유정제시설능력이 국내 총수요의 130%(약 80% 가동을 안전가동으로 보고 국내 수요분만큼만 생산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석유정제시설의 건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철저한 허가제임). 이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질호의 기회(주변국의 석유수요 및 공급 증가현상)를 활용할 수 없도록 제도가 앞을 막고 있는 것이다.

석유산업을 내수산업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이 시점에서 반드시 깊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산업도 내수산업으로만 한정시키게 되면 내수시장에서의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지고 사업행태도 옹졸해지는 법이다. 국제시장으로 눈을 돌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하며, 기업 스스로 국제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애물을 걷어 주어야 한다. 국제시장에서의 경쟁경험이 없이 내수시장에서만의 경쟁경험만으로는 국내

석유시장이 개방되었을 때 국제석유 메이저들과의 경쟁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너무도 자명하지 않은가. 늦었지만 하루 속히 정유사에게 국제화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석유산업을 내수산업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정유사가 정제시설을 자율적으로 짓도록 허용할 때 항상 반대논리로 등장하는 것이 과잉투자문제이다. 그렇다면 과연 석유산업에서의 과잉투자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우선 석유제품의 連產性과 국내 석유流通構造를 고려해볼 때 국내시장 쟁탈을 위한 과잉투자의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석유제품의 連產性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시설을 과잉투자하게 되면 여러 석유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므로 이를 전부 판매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석유유통구조상 경질유(휘발유/등유/경유)는 반드시 대리점→주유소를 경유하여 판매하여야 하는 바, 그 많은 양을 판매할 수 있는 주유소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굳이 주유소허가제, 폴사인제를 거론하지 않아도 석유유통시장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주유소 1개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수긍이 갈 것이다. 둘째 정유사에 석유제품 수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상황에서 정유사들이 굳이 정제시설, 과잉투자를 할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점이다. 석유제품 수입을 통하

여 얼마든지 석유제품을 조달하여 국내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데 굳이 생산을 과잉적으로 확대시킬 연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오히려 허가된 정제시설도 그 適期를 기다리기 위해 건설을 지연시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참으로 기우라는 것이 명확하다.

셋째 아무리 統制油價체제이지만, 경쟁체제는 유지되고 있고 따라서, 과잉투자시 부담은 자사비용부담으로 귀착되는데 과잉투자를 누가 어렵석게 실행한다는 말인가.

정제시설허가제하에서는 정제시설 허가 그 자체가 排他的 利權(다른 기업이 투자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음)이기에 정제시설허가를 얻기 위해 정유사는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그렇다고 허가제를 해제하여도 이러한 정제시설확보에 대한 요구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허가제 속에서 바라보는 잔영이요 착각일 것이다. 정제시설을 한번 지으면 보통 약 30년 이상을 사용(64년 가동된 유공의 1호시설이 아직도 가동중임)하는데, 기업이 장기적인 전략에서 경제규모로 이를 건설하여야지 정부가 국내예상수요로부터 산출된 국내 필요시설규모를 정유사별로 적당히 배정해 준다면 그 판단의 리스크와 향후 정제시설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책임문제는 어떻게 남게 되는 것인가. 실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가지 구별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있다. 즉

석유정제업 신규참입문제는 석유정제시설허가제 문제와 분리하여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석유정제업허가제는 공정경쟁 여건상 유가자유화와 연계되어 있고 협정유 5사 체제의 유효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고, 석유정제시설 허가제는 현 석유산업을 내수산업으로 계속 한정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두 문제를 구분하여 대안을 찾게 되면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해진다.

관성의 법칙은 물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修身이라는 말의 身에 해당되는 개념으로서 Mind를 포함함. 몸과 氣에 대하여 관심있는 분은 김용옥씨의 저서를 참조)에도 적용되는 자연의 원리라고 생각된다. 개혁은 바로 이러한 몸의 관성체계중 향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도려내는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몸의 관성체계는 어지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떼어지지 않는 것이다. 단순한 지식이나 이해 정도로는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이나 이해만 가지고는 담배조차 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몸의 관성체계이다. 이러한 몸의 관성체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인식과 이해의 단계가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그 실천을 위한 意志와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몸의 관성에 의해 歷史는 순환할 따름이다. ♡